

# 제13판 [ ]

이재상 · 강동범 · 정현미 공저

## 01~39

### 01. p94. 문9 해설 맨 아랫줄

④ 대법원 2006.10.19, 2005도3039 전원합의체판결. → ④ 대법원 2006.10.19, 2005도 3909 전원합의체판결.

### 02. p108. 문1 지문 ㉠의 2행

인관관계를 → 인과관계를

### 03. p130. 문3 해설 2행

㉠ 신분은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점에서 → ㉠ 주체로서의 신분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지만 책임신분이나 처벌조건인 신분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04. p131. 문5 해설

용인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뿐만 아니라 인식하였더라도 용인의사가 없는 때에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해석한다. → 용인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 없는 과실이 된다.

### 05. p140. 문8 해설

③ 甲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므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법정적 부합설과 동일하게 B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므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법정적 부합설과 동일하게 A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B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한다.

### 06. p165. 문3 해설

⑤ 형법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인질상해·치상죄와 인질살해·치사죄의 미수범 처벌규정(324조의5), 강도상해·치상죄와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와 해상강도살인·치사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들 수 있다. → ⑤ 형법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인질치상죄와 인질치사죄의 미수범

처벌규정(324조의5), 강도치상죄와 강도치사죄 및 해상강도치상죄와 해상강도치사죄의 미수범 처벌규정(342조)을 들 수 있다.

07. p167. 문5 해설

㉠ (X) 강도치상죄는 강도의 기회에 → ㉠ (X) 강도치사죄는 강도의 기회에

08. p204. 문7 ④의 3행

丙의 집에 대해 긴급피난이고 → 丙의 그림액자에 대해 긴급피난이고

09. p322. 문4

〈보기 2〉이 올바르게 → 〈보기 2〉가 올바르게

10. p342. 문10 해설 7행

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된다. →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이 된다.

11. p367. 문3 해설

E(X) 甲의 행위는 살인죄의 미수인가 기수인가가 문제될 뿐이다. → E(X) 甲의 행위는 살인죄의 교사범인가 간접정범인가가 문제될 뿐이다.

12. p375. 문1 ③의 7행

물을 수 없다. → 물을 수 없다.

13. p399. 문4 해설

㉠ 대법원 1991.5.14, 91도542 → 대법원 1967.12.19, 67도1281

㉡ 대법원 1967.12.19, 67도1281 → 대법원 1969.4.22, 69도255

㉢ 대법원 1969.4.22, 69도255 → 대법원 1967.1.24, 66도1586

14. p404. 문8 해설 3행

따라서 甲의 죄책은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丁에 대한 과실치사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과실치사죄의 교사범은 있을 수 없으므로 甲은 살인미수의 교사범이 된다.

→ 따라서 甲의 죄책은 丙에 대한 살인교사의 미수와 丁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5. p405. 문9 ㉠의 3행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교사자는 실행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6. p406. 아래에서 4행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문10~11)에 대하여 답하시오. →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문11~12)에 대하여 답하시오.

17. p406. 아래에서 3행

〈사시 2007년: 배점 2〉 삭제

18. p409. 문1 해설

㉔ (X) 다수설은 공범중속성설을 근거로 예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 밑줄 부분 삭제

19. p409. 문1 지문

[1] 문제 마지막에 (다수설에 의함) → (다수설에 의함)을 삭제

[2] ㉔ 예비에 대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 ㉔ 판례에 의하면 예비에 대한 방조는 인정된다.

[3] ㉔ 방조행위와 정범의... → ㉔ 다수설에 의하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20. p419. 문11 ⑤의 2행

허위인정을 → 허위인 정을

21. p442. 문3 지문 ④의 1행

1개의 문서위조만 → 1개의 문서위조죄만

22. p449. 문5 ㉔의 지문 중

절취한 카메라를 부서버렸다. → 절취한 카메라를 부숩버렸다.

23. p449. 문6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 것의 조합은? (판례에 의함) →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지 않는 것의 조합은? (판례에 의함)

24. p449. 문6 해설 맨 아랫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㉔㉔㉔이고, ㉔㉔은 경합범이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㉔㉔이고, ㉔㉔은 경합범이고, ㉔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다.

25. p453. 문10 ②의 1행

자신의 그 신용카드의 →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26. p485. 문25

F. 운전면허 없이도로교통법이 → F.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이

27. p497. 문6 해설

(i)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i)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8. p497. 문7 해설 2행

있다. ㉠ → 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다. ㉣

29. p497. 문7 해설 3행 이하

따라서 몰수할 수 없는 것은 ㉠㉡ 2개이다. → 따라서 몰수할 수 없는 것은 ㉠㉡㉢ 3개이다. ㉢ 관세법 제188조 1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조 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4.6.11. 74도352).

30. p497. 문7 정답

㉢ → ㉣

31. p504. 문14 지문 (6)의 2행

부서서 → 부쉬서

32. p510. 문6 지문 ㉣

㉣ 징역형과 벌금형을 → ㉣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33. p512. 문9 해설 1행

형의 가감은 각 본조에 의한 가중, 누범가중 → 형의 가감은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가중

34. p515. 문2 지문 ㉠

㉠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형 면제를 → ㉠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형 집행면제를

35. p517. 문4 지문 ㉡

㉡ 유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 유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이상이다.

36. p522. 문4 해설 중 ㉔

㉔ A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상고심의 계속중에 B죄를 범한 경우이다. A죄와 B죄는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B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 ㉔ A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상고심의 계속중에 B죄를 범한 경우이다. B죄는 A죄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37. p523. 문6 지문 ㉑

㉑ 자유형 중 → ㉑ 하나의 자유형 중

38. P532. 박스 內 해설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39. P536. 문16 해설 중 B

B(X) 공갈에 의하여 甲 이 취득한 금전은 범죄행위의 산출물로서 형벌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대상이다. → B(X) 현금 200만원은 피해자 乙의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할 수 없고 피해자 乙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 환부해야 한다.

40~59

40. p559. 문7 지문 중 괄호 속 한자

정사(情事) → 정사(情死)

41. p592. 문2 정답

⑥ → ③

42. p592. 문2 해설 보충

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1.5.28, 91도80).

[판결이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조치는 정당하다.

43. p597. 문5 해설 ㉔

㉔ 강간죄나 강도죄와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㉔ 강간죄나 강도죄와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4. p609. 문3 ㉔의 4행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45. p614. 문7 해설 ㉔ 보충

1995년 개정 전 제301조(강간치사상)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대판 1987.1.20, 86도 2360),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대판 1990.5.8, 90도 670)가 성립하였으나, 1995년 형법 개정에서 강간살인죄(제301조의 2: 사형 또는 무기징역)가 신설된 이래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강간살인죄로서 단순1죄가 성립된다. 즉 강간살인죄는 강간범인이 강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지면 족하다. 강도살인죄 판결(대법원 1996.7.12, 96도1108), 강도상해치사죄(대법원 1992.1.21, 91도2727) 참조.

46. p648. 문8 ㉔의 2행

임용심사업무 → 임용심사업무

47. p651. 문11 지문 2행

추적·실시하는 → 추진·실시하는

48. p933. 문3 해설 ㉔

㉔ 변조는 유형위조로서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기존문서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 ㉔ 변조는 유형위조로서 작성권한 없는 자가 기존문서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49. p941. 문12 정답(복수정답)

㉔ → ㉔㉕

50. p941. 문12 해설 ㉕

㉕에 대하여 다수설은 일정한 형식을 구비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에게 문서를 작성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죄의 성립을 부정함에 반하여, 판례(대법원 1977.12.27, 77도2155)와 소수설(이재상 § 32/66)은 → ㉕에 대하여 소수설은 일정한 형식을 구비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에게 문서를 작성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유로 본죄의 성립을 부정함에 반하여, 판례(대법원 1977.12.27, 77도2155)와 다수설(이재상 § 32/66)은

51. p949. 문21 해설 ㉓

㉓ 설문만으로는 甲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 ㉓ 설문만으로는 甲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52. p988. 문3 지문 ㉓

㉓ ㉞ ㉟ → ㉓ ㉟

53. p997. 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중 5행

수된다여 → 수반하여

54. p1005. 문2 해설 중 ㉞

㉞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 수 있도 자기가 편승한 차라고 할지라도 → ㉞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 임 내지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자기가 편승한 차라고 할지라도

55. p1014. 문10 ㉕의 지문 3행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구성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56. p1059. 문18 해설 중 ㉓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공무제외설)로 변경되었다. → 업무방 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공무제외설)이다.

57. p1085. 문16 지문 중 <사례 7>

㉠ 범인은닉·도피죄 → ㉠ 증인은닉·도피죄

58. p1086. 문16 해설 중 <사례 7>

㉠ 구인증인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증인이 도주한 때에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 이 다수설이므로 이때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 ㉠ 증인은 '별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자' 가 아니므로 범인은닉·도피죄의 객체는 아니다. 다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증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 다.

59. p1112. 문7 해설 ㉞

㉞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할 뿐 아니라 사자에 대한 무고는 구성 요건해당성이 없다. → 밑줄 삭제